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3236
------------	------

2022. 6.1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 요”

- 이 의견청취안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내 호림관 시설 증축 등을 위해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대학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성북구 정릉동 656-1일대	36,269	감) 321	35,948	서고시 제315호 (1995.11.18)	

※ 학교시설 선형변경 없으며, 토지의 등록전환 및 분할과 합병으로 인한 공부상(토지대장)면적으로 정리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구역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면 적 (m ²)	비 고
관 리	혁신성장구역	①	21,996	
유 지	외부활동구역	②	13,952	
합 계			35,948	

-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m ²)	조례건폐율 (%)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	비 고
			기 정	변 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381.9	3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5,566.10	60	14.46	14.83	25	

- 밀도계획[용적률]

구분	총면적 (m ²)	비오톱 1등급지 (m ²)	공원 (m ²)	밀도산정 기준면적 (m ²)	조례 용적률 (%)	사용용적률(%)		관리 용적률 (%)	비 고
						기 정	변 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381.9	-	-	381.9	15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5,566.1	-	-	35,566.1	200	71.34	79.35	163	

- 밀도계획[구역별 조서(용적률 및 높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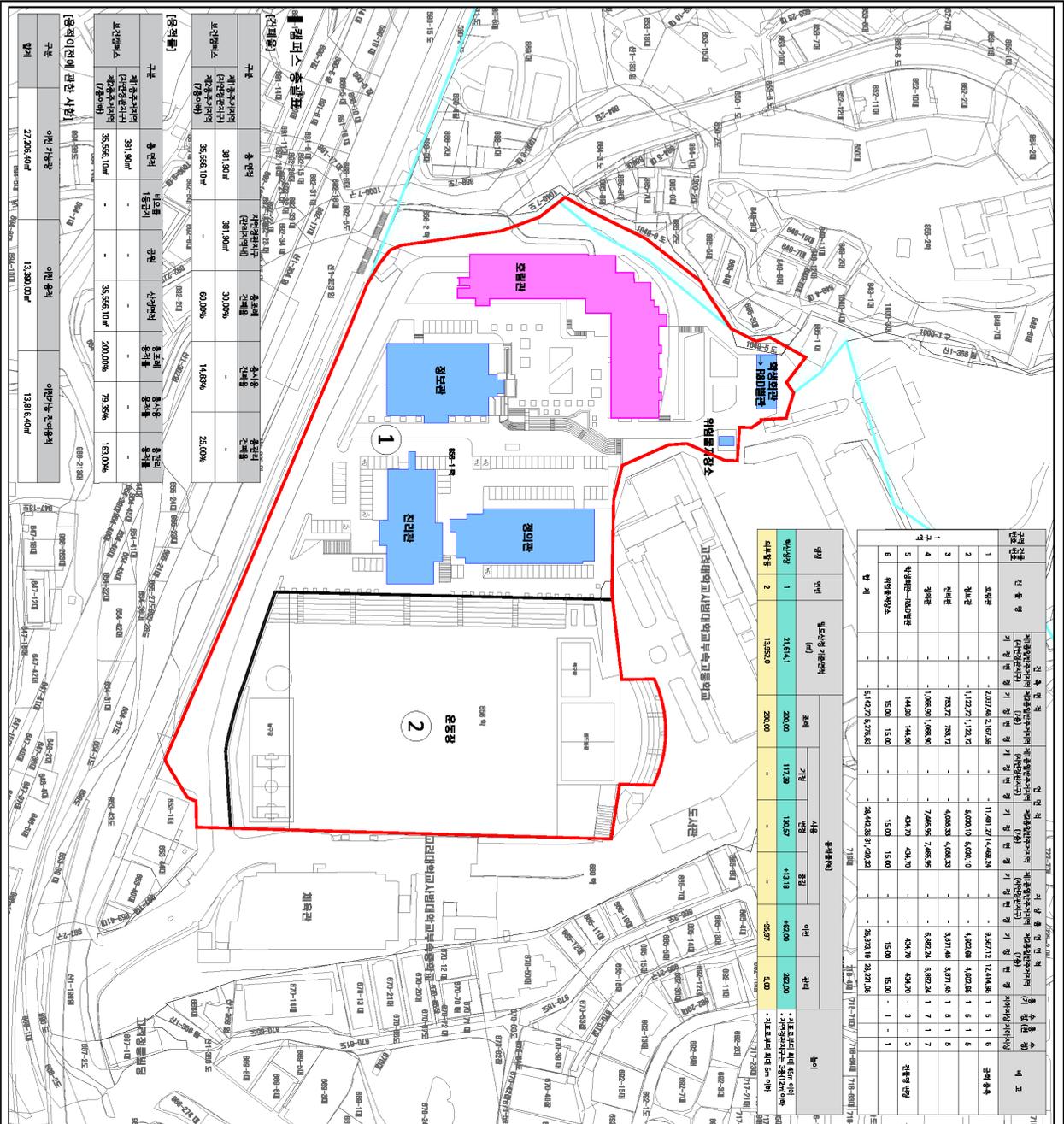
구역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m ²)	조 례 용적률 (%)	사용용적률(%)		이 전 용적률 (%)	관 리 용적률 (%)	관 리 높 이 (m)	비 고
			기정	변경				
①	21,614.1	200	117.39	130.57	+62	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로부터 최대 +45m이하 자연경관지구는 3층(12m)이하 	혁신 성장 구역
②	13,952.0	200	-	-	-9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로부터 최대 +5m이하 	외부 활동 구역
합계	35,566.1	200	71.34	79.35	-	163	-	

※ 밀도산정기준면적 : 21,996 m²(①구역 면적) - 381.9 m²(현황도로, 자연경관지구) = 21,614.1 m²

- 변경 건축물 조서

구역	건물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지상층연면적(m ²)		층수(지하/지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혁신 성장 구역	1	호림관	2,037.48	2,167.59	11,491.27	14,469.24	9,567.12	12,414.98	1/5	1/6	일부 증축
	5	학생회관 → R&D 센터	144.90	144.90	434.70	434.70	434.70	434.70	0/3	0/3	건물명 변경
합 계			2,182.38	2,312.49	11,925.97	14,903.94	10,001.82	12,849.68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도



구분	면적(㎡)	용도별 면적(㎡)				합계
		도법관	정보관	전리관	운동장	
1	21,614.1	200.00	117.39	138.57	113.18	462.00
2	13,820.0	200.00	-	-	-	462.00
합계	35,434.1	400.00	117.39	138.57	113.18	924.00

구분	면적(㎡)	비율(%)
도법관	200.00	0.56%
정보관	117.39	0.33%
전리관	138.57	0.39%
운동장	113.18	0.32%
합계	462.00	1.29%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세부시설조성계획도 (변경)

범례 (LEGEND)

- 도시계획시설(대학)
- 기정결정 건축물
- 중추예정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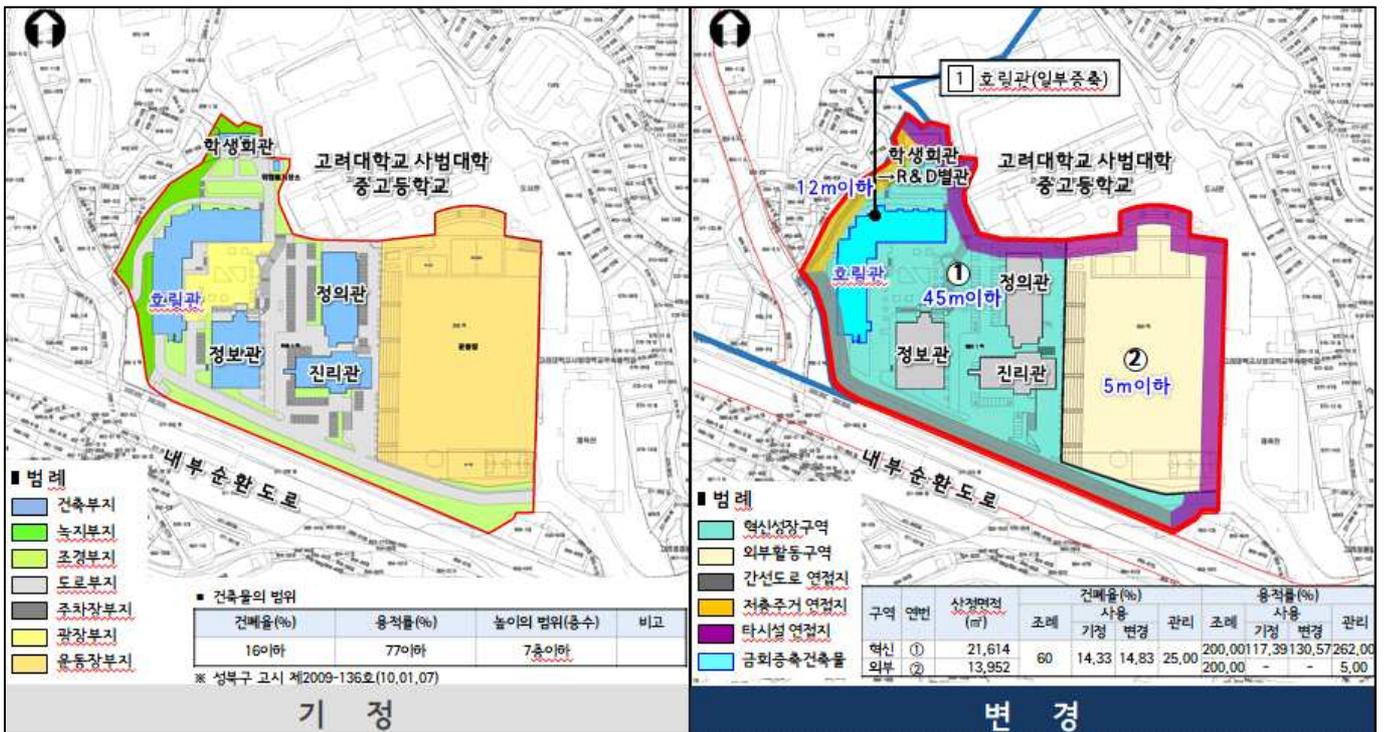
S = 1:1000

“의견청취 경위”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 학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하는 시설로서(붙임1), 서울시는 대학 캠퍼스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관리를 위해 ‘14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이하, 서울시 기준)을 마련하여(‘14.2.) 구역·밀도·높이 등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가운데1)(붙임2),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은 ‘14년 서울시 기준 전 세부시설조성계획이 결정되어(최초결정 ‘03.6., 변경결정 ‘09.1.)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에서, 이번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시 기본계획 수립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됨2).

※ 세부시설조성계획 지정 및 변경



- 1) ‘19년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으로(‘19.12.)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세부시설조성계획 사항에 포함됨
- 2) 서울시 소재 대학교 54개소 중 30개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붙임2)

“배경 및 현황”

- 고려대학교는 서울 안암동 및 정릉동, 세종시에 캠퍼스가 있는 가운데, 정릉동의 보건과학대학은 '15년 안암동 본교캠퍼스로 이전하여 대상지는(정릉동) 현재 일부 산학협력단의 연구시설 및 의료원 본부 시설 등으로 사용 중인 가운데,

고려대학교는 '28년까지 대상지를 방역·바이오 중심의 교육·연구·산업단지로(첨단의료과학센터) 조성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기존 건물을 1개층 증축하여(호림관 5층→6층) 바이러스·감염병 등의 연구실·동물실험실·동물사육실 등을 확충코자 이번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함.

구분	본교캠퍼스	세종캠퍼스	보건과학대학
위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면적	640,850m ²	421,519m ²	35,948m ²
학생수(재학)	22,407명	8,200명	-
학과	63개 학과	41개 학과	-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첨단의료과학센터
고려대학교 본교캠퍼스 (제2캠퍼스)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본교캠퍼스 (제3캠퍼스) 하나과학관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부지
- 의사 양성	- 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의과학, 건강에 관한 공학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의공학,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적용하려는 환경과학,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보건정책관리학 등의 전문가 양성	- '15년 보건과학대 이전 후 공간 활용이 미비한 부지를 메디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통해 K방역 및 K바이오 의 국제화를 선도할 교육, 연구, 산업의 연구단지 조성

- 대상지 일대는 북한산과 북악산 사이에 위치하여 경관 관리가 중요한 지역으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상지는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고³⁾, 남측은 내부순환도로 및 정릉로(40m)에, 서측은 저층주거지에⁴⁾, 북동측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및 부속고등학교에 연접하고 있으며, 서측 인근에는 국민대학교가, 북동측 800m 거리에는 북한산 보국문역이(우이신설선) 위치하고 있음.



- 3) 대상지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이 일부 있음
 -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 381.90㎡(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5,566.10㎡(99%)
- 4) 주로 4층 이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분포



- 대상지에는 호림관·진리관·정의관·정보관·학생회관 등의 건물과 운동장이 있으며, 운동장은 부속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호림관 1개층을 증축하고 ‘학생회관’을 ‘R&D 별관’으로 건물명을 변경하는 사항임.

구역	건물번호	건물명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지상층연면적(m ²)		층수 (지하/지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혁신성장구역	1	호림관	2,037.48	2,167.59	11,491.27	14,469.24	9,567.12	12,414.98	1/5	1/6
	5	학생회관 → R&D별관	144.90	144.90	434.70	434.70	434.70	434.70	0/3	0/3
합 계			2,182.38	2,312.49	11,925.97	14,903.94	10,001.82	12,849.68		



“계획의 주요 내용”

- 기본계획은 학교시설의 종합계획이자 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 서울시 기준에 따라(붙임1) 구역·밀도·높이·입지특성·건축배치·기숙사배치·혁신성장·지역상생·그린캠퍼스 계획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상지는 산·학·연 융복합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 계획에 초점을 두고, 운동장을(외부활동구역) 제외한 모든 캠퍼스를 혁신성장구역으로 계획함⁵⁾.

구분	①구역	②구역
구역계획	혁신성장구역	외부활동구역
구역별 성격	산학연 공간적 융·복합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운동장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관 백신개발 제품화 플랫폼 구축 및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건축물 계획 - 메디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통해 K방역 및 K바이오의 국제화를 선도할 교육, 연구, 산업의 연구단지 조성 	인접한 고려대 사범대 부속 중·고등학교의 운동장으로 활용 중
건폐율	조례: 60%, 사용: 14.83%, 관리: 25%	
용적률 ⁶⁾	조례: 200%, 사용: 130.57%, 관리: 262%	조례: 200%, 사용: 0%, 관리: 5%
높이	최대 45m이하 (자연경관지구 3층 12m이하)	최대 5m이하

5) 혁신성장구역은 ‘21년에 처음 도입됨

※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 경위

’14.2.22(제정)	최초 수립
’15.9.22(1차개정)	외부활동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16.10.17(2차개정)	저층주거연접지 완화기준, 지하개발기준 등 신설
’18.11.14(3차개정)	1.5D 사선적용 완화, 가로활성화 건축물 층수 완화 등
’21.10.1(4차개정)	혁신성장구역(계획)신설, 지역공동체계획→지역상생계획, 기숙사배치계획 구체화 등

6)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붙임1), 외부활동구역 등의 남은 용적률은 일반관리구역·혁신성장

○ 혁신성장계획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경쟁력의 다각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학연 공간적 융·복합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혁신성장구역·시설에 적용되며, 대상지는 방역·바이오 중심의 연구시설 및 산·학·연 협력시설 조성을 계획함.

○ 좀 더 살펴보면, 이번 호림관 증축 외에, 향후 진리관·정의관 철거 및 신축 등을 통해, 백신과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산학협력 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보관은 존속되고, 호림관 증축 및 각 10층 이하의 4개 건물 신축이 계획되어 있어⁷⁾, 증축 및 신축이 완료되면, 구역 용적률이 현재 117.39%에서 248.5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⁸⁾.

건물명	지상층 연면적(㎡)		높이(층수)	계획용도	비고
	현황	계획			
호림관	9,567.12	12,414.98	지상1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6층	백신혁신센터, 연구실험실, 산학연협력시설	1개층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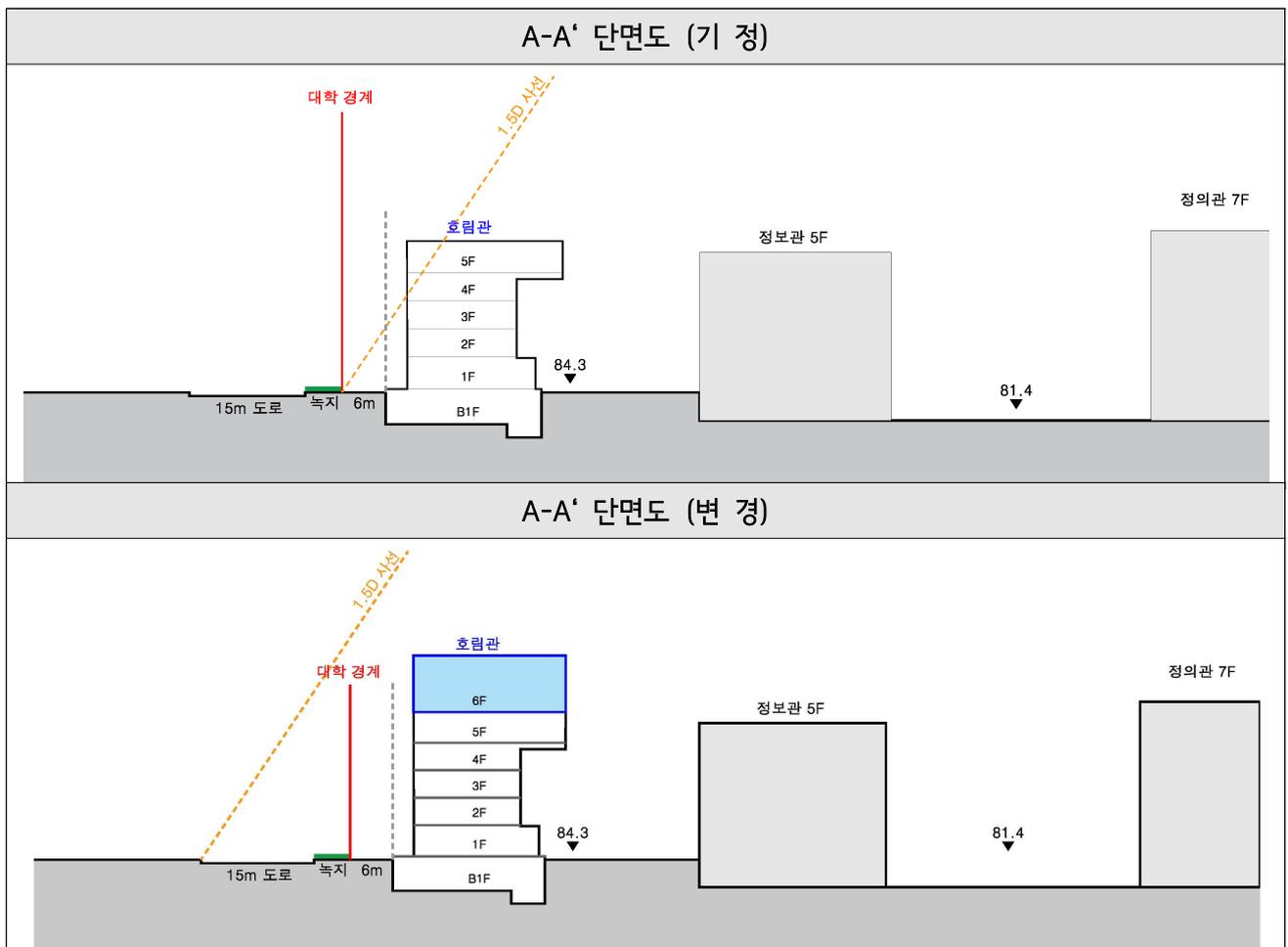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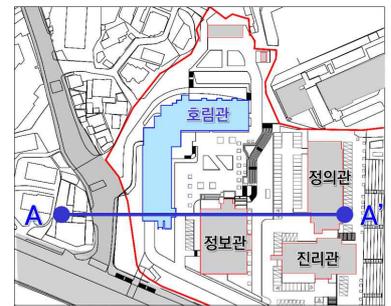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어, 대상지는 외부활동구역 남은 용적률(195%) 중 약 1/2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하여 관리용적률 계획을 수립함

구분	구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	관리용적률 (㎡)	이전용적률 (%)	이전가능량 (㎡)	이전용적 (%)	이전가능 잔여량(㎡)
혁신성장 구역	① 제1종	381.9	150.00	-	-	-	-	-
	제2종	21,614.1	200.00	262.00	+61.95	-	+13,390.00	-
외부활동 구역	② 제2종	13,952.0	200.00	5.00	-95.97	27,206.40	-13,390.00	13,816.40

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계획되어야 하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8) 이번 호림관 증축에 따른 구역 사용 용적률은 130.57%임

- 한편, 이번에 추진되는 호림관 증축은 높이 완화를 계획하였는데, 현재 높이도(5층) 학교 경계부 기준 1.5D 사선제한에 저촉되어, 증축을 위해서는 높이 기준 완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됨⁹⁾. 참고로, 호림관과 연접 주거지는 도로와(서측 정릉로9길 폭 3~5m, 북서측 현황 도로, 폭 3~5m) 대학부지로(폭 13m~) 이격되어 있음.



9) 호림관은 경계부에 위치하여 학교 경계부 기준 1.5D 사선제한을 적용케 되나, 혁신성장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반대편 경계 기준 1.5D 사선 적용'으로 완화 가능

-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성을 다루는 입지특성계획과 지역상생계획을 보면, 주거지 연결지, 타 시설 연결지, 간선도로 연결지로 구분하여 각각 경계부·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하되, 운동장 개방 외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시설·프로그램은 없으며, 향후 신축 건물의 지역사회 개방 계획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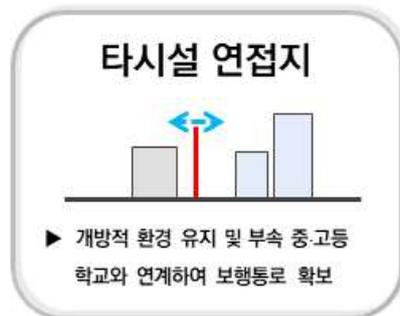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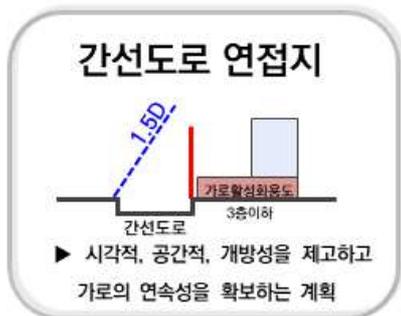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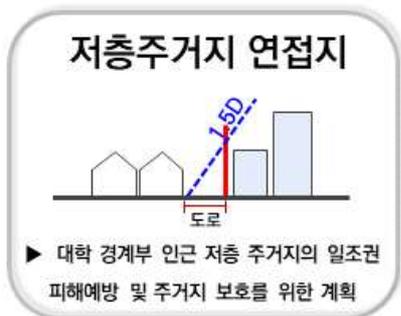
저층주거지 연결지



간선도로 연결지



타시설 연결지(고려대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재원조달계획”

- 건물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410억 원으로 학교법인에서(고려중앙학원 자체부담금) 전액 집행할 계획임(공사기간 '22.9.~ '23.1.).

[단위: 백만 원]

구 분	구분		비 고
	년도	2022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자체부담금
건축기금	증축공사비	31,000	
	장비비	10,000	
	총 공사비	41,000	

“종 합”

- 이 의견청취안은, 종전 교육·연구시설 중심에서 향후 산·학·연 협력 시설 및 연구시설 중심으로 학교시설을 재편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건물 1개층을 증축하려는 사안으로,

융·복합 산업환경의 요구 및 대학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증축할 건물이 저층 주거지에(4층 이하) 연접하고는 있으나, 도로·대학부지 등 주거지와 건물간 이격거리를 고려하면 1개층 증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상지가 교육시설에서 산학연 협력시설로 재편되면, 연구인·기업인·사무인 등이 주요 종사자로서, 종사자 및 주변 주민·학생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더불어, 주

민 헬스 케어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여 산·학·연과 지역사회가 융합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
연락처	02-2180-8206
이메일	rienrien@seoul.go.kr

<붙임 1>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5.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21.10.1.)

1-2-2 용어의 정의

(1) **기본계획** : 본「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운영기준」에 의해 수립한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학교시설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 구역구분, 밀도, 높이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변경)하는 계획

1-4-2 내용

(1)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은 구역계획, 밀도계획, 입지특성계획, 건축배치계획, 기숙사배치계획, 혁신성장계획, 지역상생계획, 그린캠퍼스계획으로 구성한다.

2-2-5. 혁신성장구역

(1) 2개동 이상의 "혁신성장시설"이 입지한 구역으로서 혁신성장용도 및 지역기여용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2) "혁신성장시설"이라 함은 건물단위의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시설

3-2-1.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의 용적률은 일반관리구역과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단, 비오톱 1등급지 또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는 용적률 이전이 불가하고, 비오톱 1등급지는 혁신성장시설에 한해 이전 가능하다.

3-2-2. 구역별 용적률은 용적률을 이전받아 400%까지 적용 가능하다. 단, 혁신성장구역은 혁신성장시설 설치 시 최대 500%까지 적용 가능하다.

[표 23] 용적률계획

구 분	용적률의 사용	용적률 이전 *주1
일반관리구역	○	◎
혁신성장구역	○	◎
상징경관구역	X	●
외부활동구역	X	●
녹지보존구역	X	● (비오톱1등급*주2, 공원 제외)

*주1) 용적률 이전 : 상징관리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의 유지·보존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 구역의 여유 용적률을 일반관리구역 또는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 가능

● 구역의 여유 용적률을 이전시킬 수 있는 구역

◎ 여유 용적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구역

*주2) 비오톱1등급 : 개별비오톱1등급과 유형비오톱1등급 부지임.

8-1-1. "혁신성장계획"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산학연 공간적 융복합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교육혁신방안, 기업연계방안, 지역협력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8-1-2. "교육혁신방안"은 교육시스템의 대전환시대 학제간 융복합 환경 및 산학연 협력 및 체험환경 마련을 통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8-1-3. "기업연계방안"은 산학연 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기업에 공간과 기술을 제공하여 인큐베이터 역할을 부여하고, 캠퍼스 내 창업기업의 공간적 기반을 제공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대학도시의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8-1-4. "지역협력방안"은 혁신성장구역 내 생활SOC 등 지역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익시설 또는 생활 혁신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8-2-1. "혁신성장계획"은 혁신성장구역(시설)에 입지한 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관리계획으로서, 혁신성장시설 및 혁신성장구역에 대한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8-2-2. "혁신성장시설"이라 함은 건물단위의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혁신성장기능은 전체 연면적 기준 50%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2-3. "혁신성장구역"은 2개동 이상의 혁신성장시설이 입지한 구역으로서 혁신성장용도 및 지역기여용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 배치계획 및 외부공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원칙으로 한다.

- 혁신성장용도 : 산학연협력시설, 창업지원시설 등 혁신성장용도

- 지역기여용도 : 지역기여시설(생활밀착형 생활SOC 등), 가로활성화 용도 등 지역기여용도

※ 혁신성장구역(시설) 용도 예시 [별표3] 참조

8-2-5. 혁신성장구역(시설)은 대학과 지역의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를 거쳐 4-2-1.학교 경계부 높이계획, 3-2. 용적률 적용계획을 완화할 수 있다.

(1) 높이완화

- 학교경계부에 혁신성장시설 입지 시 '학교 경계부 기준 1.5D 사선 적용' 기준을 '도로 반대편 경계 기준 1.5D 사선 적용'으로 완화 할 수 있다. 단, 주변지역 맥락 고려 심의를 통해 높이완화 가능하며 완화높이는 구역별 최고높이 이내로 적용 가능하다.

(2) 용적률 완화

- (용적률 적용) 혁신성장구역은 구역최대 용적률을 500%이하로 적용 할 수 있다.

- (용적률 이전) 혁신성장구역(시설)에 한하여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 또는 일반관리구역 여유용적률을 이전 받아 계획 할 수 있다. 단, 혁신성장구역 내 이전 용적률은 혁신성장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붙임 2>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수립현황 (자료: 시설계획과)

('22.5. 기준)

자치구	대학(캠퍼스)		비고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미수립	
계	30(34)	24(31)	54(65)
종로구	국민대(종로), 중앙대(평동), 성균관대, 서울대(연진)	상명대, 배화여대, 한국방송통신대, 가톨릭대(성신)	8
중구	동국대	숭의여자대	2
용산구	숙명여대	폴리텍대(정수)	2
성동구	한양대	한국방송통신대(동부)	2
광진구	건국대, 세종대	장로회신학대	3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경희대, 삼육보건대	4
중랑구	서일대		1
성북구	고려대, 국민대(정릉), 한성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수정), 한예중, 고려대(보전)	8
강북구		성신여대(운정), 한신대	2
도봉구		덕성여대	1
노원구	한국성서대,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	인덕대, 서울여대, 삼육대	6
은평구		서울기독대	1
서대문구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신촌), 추계대	감리교신학대, 경기대, 서울여자간호대, 명지전문대	8
마포구	서강대, 홍익대		2
양천구		-	0
강서구	이화여대(마곡)	KC대, 폴리텍대(강서)	3
구로구	성공회대, 동양미래대	서울한영대	3
금천구		-	0
영등포구		한국방송통신대(서부)	1
동작구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3
관악구	서울대		1
서초구	가톨릭대(성의), 서울교대, 한예중(서초)		3
강남구		-	0
송파구	한체대		1
강동구		-	0

※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 숭의여자대, 삼육보건대, KC대, 폴리텍대

※ 대학원대학 :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8조 개정에 따라 대학원대학은 시설결정대상에서 제외('04.12.3.)

- 동방대학원대학(서고-80호('04.3.20.)), 북한대학원대학((서고-346호('04.11.05)) 별도관리

※ () 캠퍼스 개소로 1개 캠퍼스가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수립한 대학으로 산정함